동 현 일 반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17. 3

동현일반산업단지개발(주)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충청남도 공주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의 이전을 촉진하고 계획적 입지를 통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 이전 희망업체의 요구사항(지리적 위치, 소요면적, 주변환경 등)을 반영한 맞춤형 단지 조성

○ 충청남도의 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동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관련 [별표3] 제2호 가목“산업단지개발사업 중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되며, 행정절차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2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법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또는 제39조의7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협의하고자 하는 사업의 면적		○ 동현 일반산업단지 면적 : 351,83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등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1.3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동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동현동 산51-1번지 일원

○ 면 적 : 351,833㎡

○ 용 도 지 역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 사업시행자 : 동현일반산업단지개발(주)

○ 사 업 기 간 : 2017년 ~ 2020년

○ 추 진 방 식 :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4호에 의한 민간개발

○ 주요유치업종

-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림 1-1) 사업지구 위치도

1.4 사업의 주요 내용

1.4.1 토지이용계획

가. 기본방향

○ 생산, 서비스, 휴식 기능이 조화된 토지이용체계 구축
○ 공공용지의 적정규모 배치로 생산 활동 지원 및 이용편익 도모
○ 공원·녹지의 적정배치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단지내외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토지이용배분과 효율성을 제고

나. 용지별 계획

1) 산업시설용지

○ 산업시설용지는 대상지 현황 및 주변 도로체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
○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유치 업종별 집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용지 배분 및 공간계획 수립

2) 지원시설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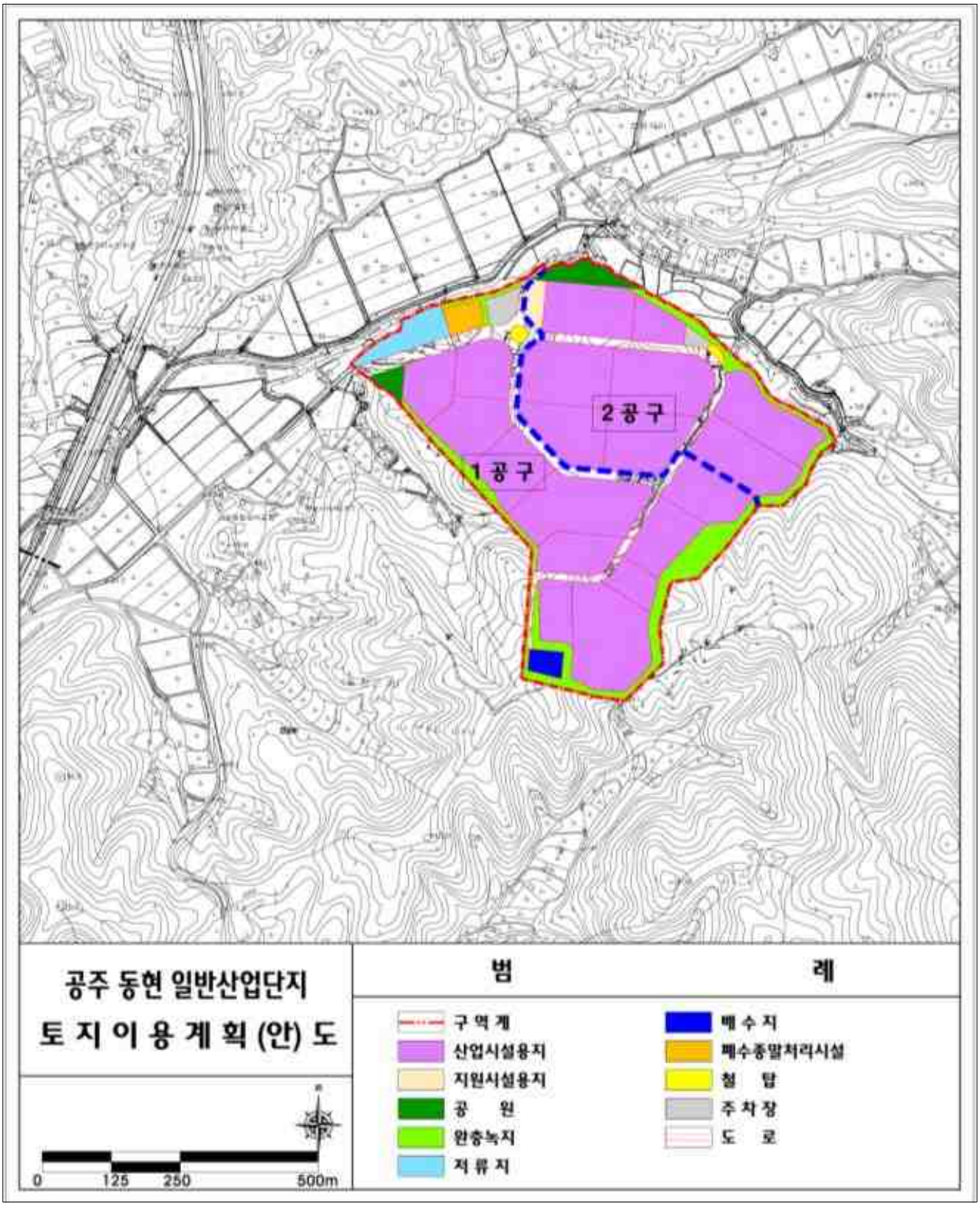
○ 산업단지 특성과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진입부 중심지에 배치하여 이용 편의성으로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 지원시설은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공공지원시설, 생산지원시설, 후생복지지원 등의 시설 유치

3) 공공시설용지

○ 단지 내 소공원 2개소를 설치하여 산업단지 입주자 및 인근 주민의 여가·휴식공간 활용
○ 단지 내 북측에 저류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주차장 등을 배치하였으며, 주변 지형여건 및 계획고를 고려하여 남측에 배수지를 배치
○ 단지 내 기존 송전철탑 2기를 토지이용계획 효율성을 고려하여 각각 단지내 진입부 회전교차로 부분과, 동측 주차장과 연접하여 이설 배치

<표 1.4-1> 토지이용계획(안)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합계	1공구	2공구		
합 계	351,833	207,583	144,250	100.0	
산업시설용지	255,763	135,444	120,319	72.7	
지원시설용지	2,817	2,817	-	0.8	
공공시설용지	93,253	69,322	23,931	26.5	
공원	7,692	2,321	5,371	2.2	
완충녹지	36,638	27,416	9,222	10.4	
저류지	7,806	7,806	-	2.2	
배수지	2,670	2,670	-	0.8	
폐수종말처리시설	3,307	3,307	-	0.9	
주차장	4,132	2,979	1,153	1.2	
도로	29,711	22,019	7,692	8.4	
철탑	1,297	804	493	0.4	



(그림 1.4-1) 토지이용계획(안)도

1.4.2 업종배치계획

가. 기본방향

○ 유치업종별 생산품, 생산과정, 공장규모 등 생산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종별로 집단화·연계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 산업시설용지 분양시 실수요에 따라 업종별 배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

나. 배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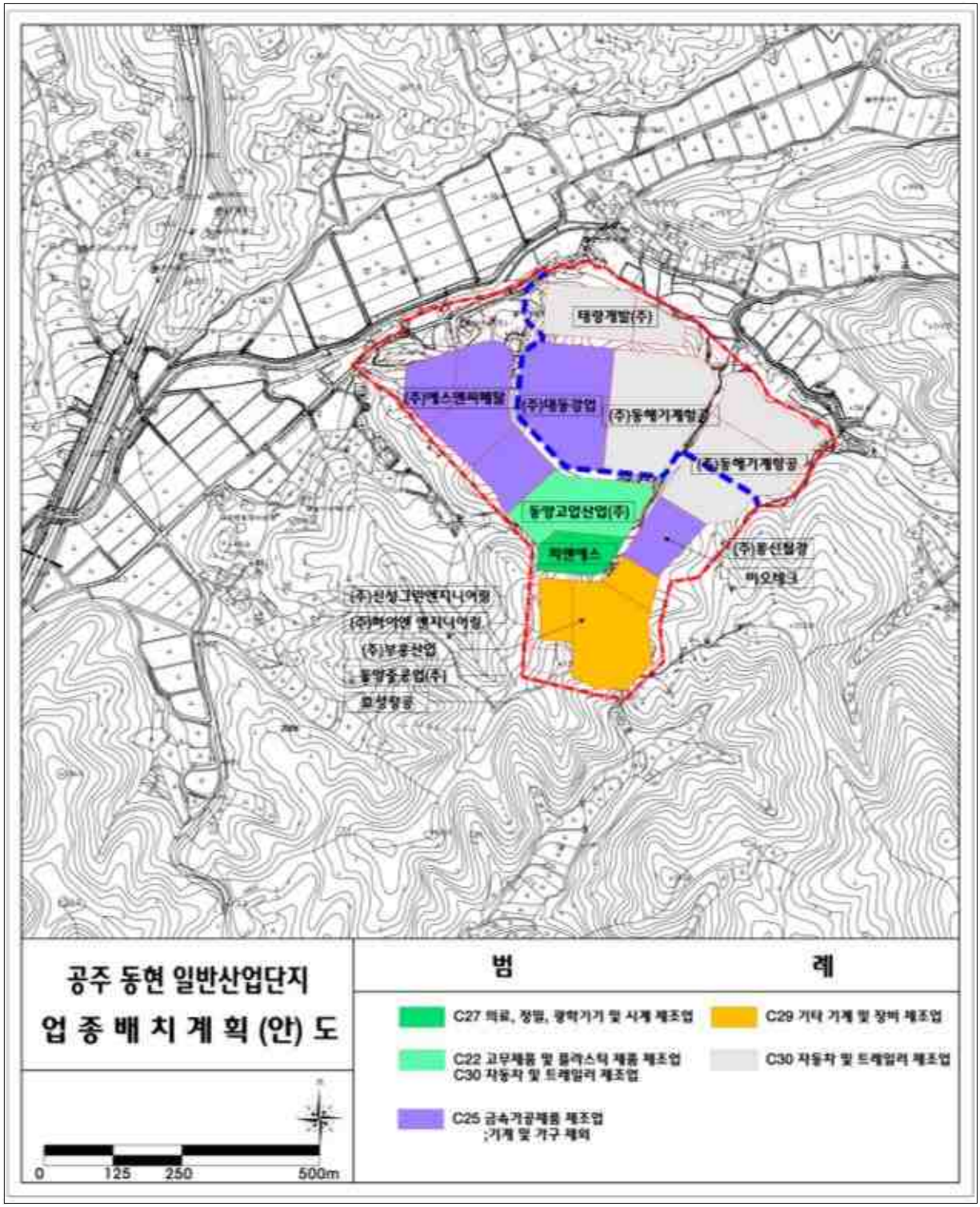
○ 산업시설용지는 접근성 및 인접한 송선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집적화시키며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소음 등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함

○ 유치업종 배치계획은 입주 희망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필요한 부지를 반영토록 하여 분양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

<표 1.4-2> 업종배치계획(안)표

구 분		계획면적(㎡)			비율(%)	비고
		합계	1공구	2공구		
계		255,763	135,444	120,319	100.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2 C30	22,735	22,735	-	8.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5	87,216	54,811	32,405	34.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9,943	9,943	-	3.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35,832	35,832	-	14.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00,037	12,123	87,914	39.1	

유치업종 중분류 코드 : 제9차 한국산업표준분류 기준 적용 2007.12개정



(그림 1.4-2) 업종배치계획(안)도

1.4.3 교통시설계획

가. 기본방향

○ 주변 산업단지의 교통처리, 접근성, 토지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선형 계획

○ 기존의 도로 및 주변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차로 및 단지 내 도로를 구성하여 주변지역 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가로망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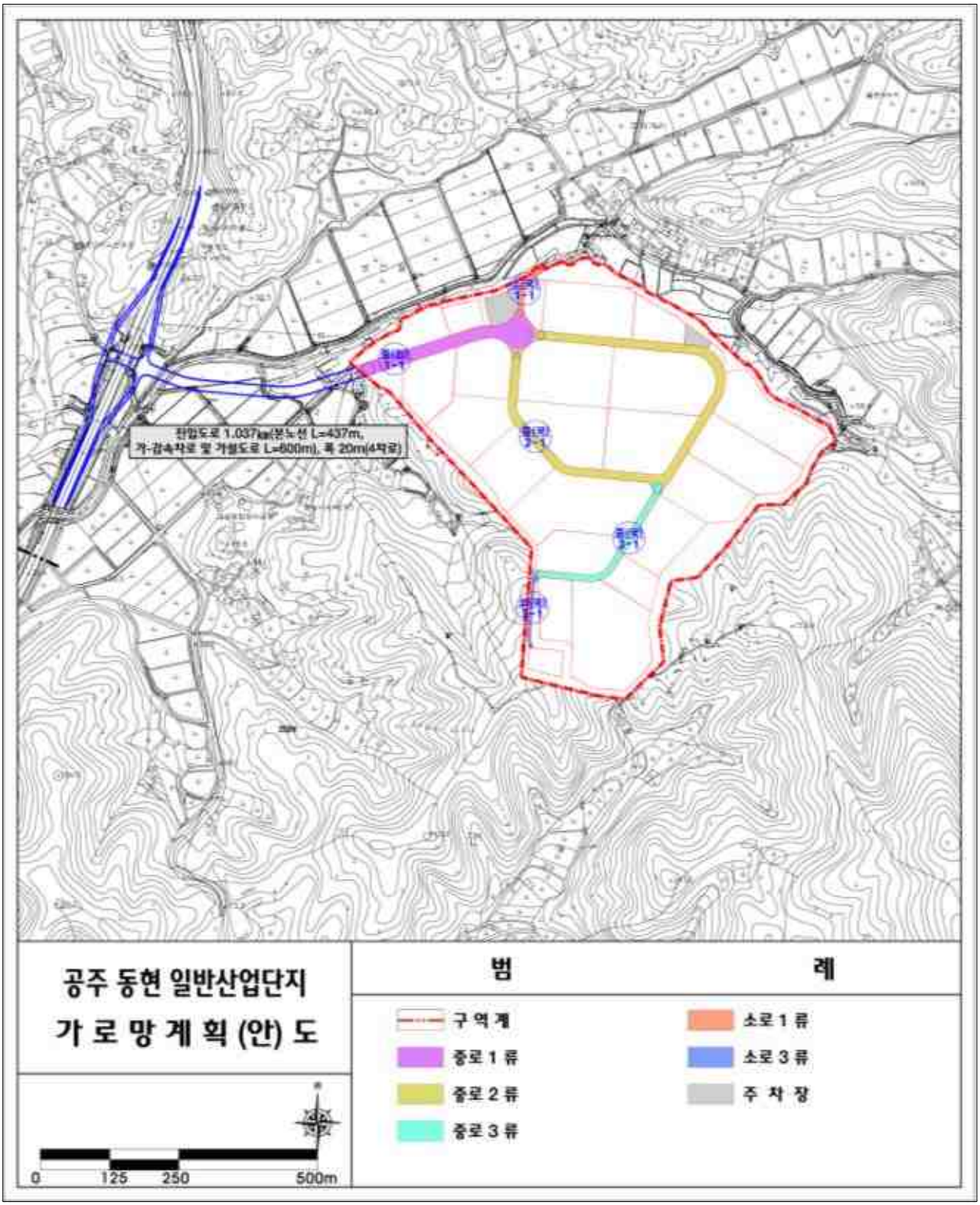
나. 배치기준

○ 사업지구 진입은 국도 23호선을 연결하여 진입토록 계획하며 단지내 가로망은 중로1류 1개 노선, 중로2류 1개 노선, 중로3류 1개 노선, 소로3류 1개 노선을 계획하여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집·분산 기능 및 국지도로 연계가 원활하도록 계획

○ 주차수요가 많은 지원시설용지 주변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사업지구 전체면적의 0.6%를 확보

<표 1.4-3> 가로망계획(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1	23	집산 도로	327	주진입도로	중로2-1	일반 도로	산업 단지내	-	
신설	중로	2	1	15	국지 도로	1,014	중로1-1	중로1-1	일반 도로	산업 단지내	-	
신설	중로	3	1	12	국지 도로	327	중로2-1	소로3-1	일반 도로	산업 단지내	-	
신설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08	중로1-1	소공원	일반 도로	산업 단지내	-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12	중로3-1	배수지	일반 도로	산업 단지내	-	



(그림 1.4-3) 가로망계획(안)도

1.4.4 공원·녹지계획

가. 기본방향

○ 산업단지 종사자의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 및 녹지용지 확보

○ 산업단지 경계부에 완충녹지를 계획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의 위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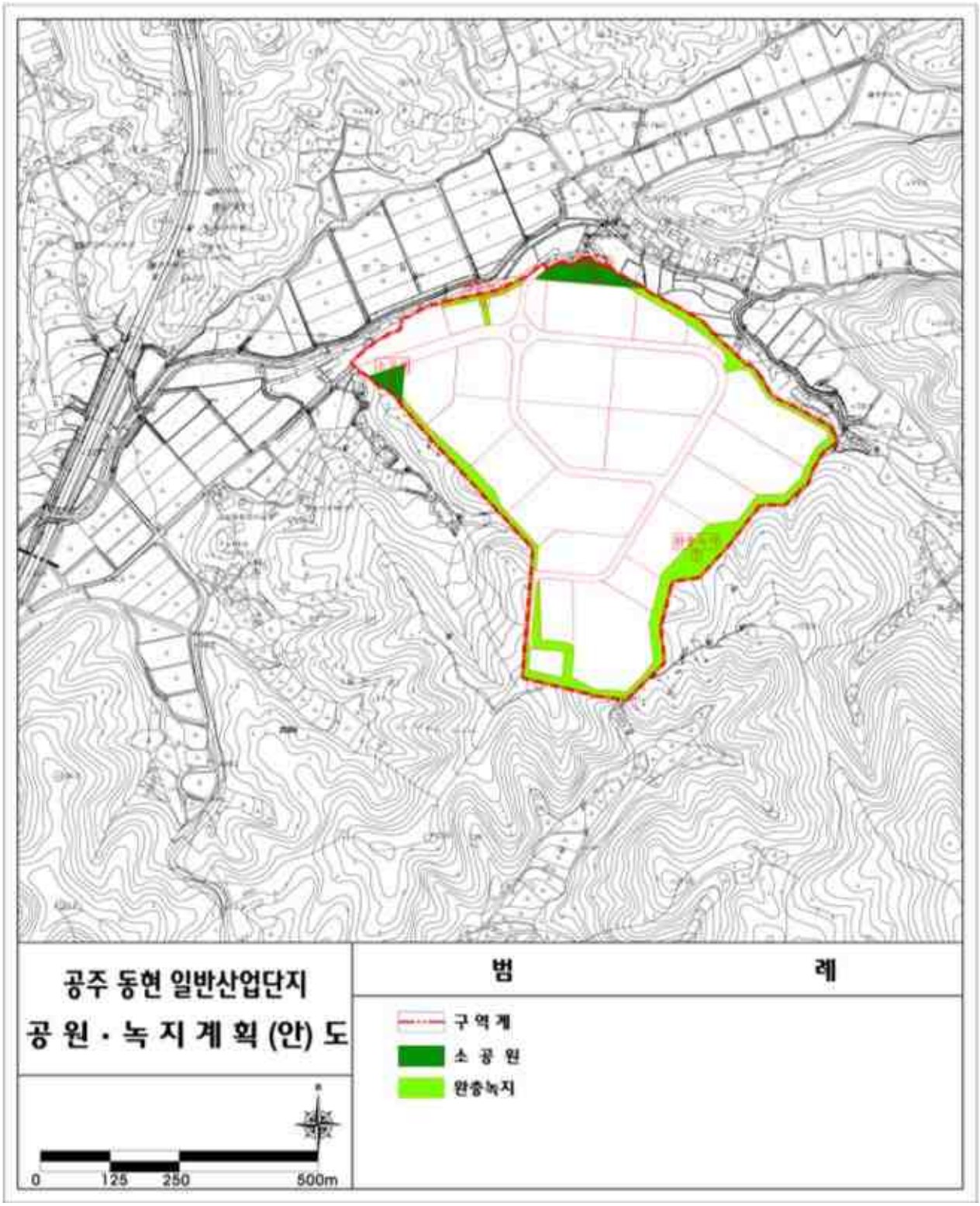
나. 공원 · 녹지계획

○ 대상지내 산업용지 종사자 및 인근 주민들의 여가, 휴식, 운동 등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소공원 2개소 계획

○ 인근 취락지 및 완충기능을 고려한 녹지대 조성 및 주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완충녹지 2개소 계획

<표 1.4-4> 공원·녹지계획(안)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공원·녹지합계					44,330		
소 계					7,692		
신설	1	소공원1	소공원	충남 공주시 동현동 산51-1번지	5,371		
신설	2	소공원2	소공원	충남 공주시 동현동 산497-2번지	2,321		
소 계					36,638		
신설	1	녹지1	완충녹지	충남 공주시 동현동 677번지	2,153		
신설	2	녹지2	완충녹지	충남 공주시 동현동 산51-1번지	34,485		



(그림 1.4-4) 공원·녹지계획(안)도

1.4.5 공급처리계획

가. 급수공급계획

○ 산업단지의 용수 공급은 공주정수장(Q=30,000㎥/일)에서 분기하여 약 3.5Km의 상수 관로를 통하여 사업 대상지에 배수지를 거쳐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임



나. 오·폐수처리계획

○ 단지내에 발생되는 오·폐수는 사업지구 북측에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한 후 기존 하천으로 방류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가. 승인기관 : 충청남도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본 과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승인기관인 충청남도, 협의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소속기관 및 지자체, 관계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본 동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방법은 협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시행하였음.

○ 일 시 : 2017년 3월 15일(수) 14:00

○ 장 소 : 충남도청 중회의실(510호)

○ 심의의원 위촉 및 참석현황 : 참석위원 7명

<표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분	성 명	소 속	직 위	해 당 분 야	비고
위원	하 ○ ○	순천향대학교	교수	대기환경	참석
위원	이 ○ ○	공주대학교	교수	생활환경	참석
위원	노 ○ ○	단국대학교	교수	건강환경	참석
위원	오 ○ ○	충청남도	환경협력팀장	공무원	참석
위원	손 ○ ○	금강유역청	환경평가과장	공무원	참석
위원	오 ○ ○	공주시	공무원	청소행정담당	참석
위원	이 ○ ○	공주시월송동	통장	주민대표	참석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반영여부

심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Ⅰ. 총괄 의견	1.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조사지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조사지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음	반영
	2. 사업지구를 1, 2공구로 구분 제시한 바, 단계별 공사계획 여부 등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지형변화 등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단계별 공사계획 여부를 제시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겠음	반영
	3.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밀하게 예측, 조사, 평가하여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밀하게 예측, 조사, 평가하여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겠음	반영
	4. 개발 예정지역이 고지대, 생태자연도 1급지 인근에 해당되므로 개발단계 및 운영 중을 포함하여 오염물질의 평가, 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본 사업의 공사 시 및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겠음.	반영
	5. 사업지구 주변에 위치한 산업단지 등 운영(계획)된 사업 추진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누적 평가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에 위치한 산업단지 등 운영(계획)된 사업 추진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누적 평가를 실시하겠음	반영
	6.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환경적 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내용, 환경저감방안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계 법령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음	반영
	7. 평가 위원들이 개진한 내용을 참고하여 항목과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조사지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음	반영
Ⅱ. 심의 의견	**1. 환경영향 대상지역의 설정**		
	1. (총괄) 가. 대상지역의 범위는 사업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	○ 대상지역의 범위는 사업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반영
	나. 평가대상지역은 사업지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현지여건에 맞게 설정하여야 하며, 토지적성평가 및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자연환경 등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대상범위를 설정하되 사업지구 주변의 주거지역 및 정온시설(주변 취락지, 학교 등을 포함) 함으로써,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영향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예측하여야 할 것임	○ 평가대상지역은 평가항목별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의 정온시설(취락지, 학교 등)을 포함하여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음	반영

심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Ⅱ. 심의 의견	2.(자연환경자산) 특정야생 동·식물(법정보호종)에 대한 조사항목과 조사시기, 조사경로를 작성(반경5km 범위)하고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 법정보호종에 대한 조사항목과 조사시기, 조사경로를 작성하고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겠음	반영
	3.(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사업지구 서측 2km밖으로 공주 도심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악취가 다량 배출되는 산업시설이 입지하는 사업으로 해당지역을 포함하여 영향예측	○ 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의 평가대상지역은 사업지구 서측의 공주 도심지 및 주변 정온시설을 포함하는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3km지역으로 설정하였음	반영
	4.(건강영향) 개발지역 인근 지역 특히 직선상 맞은 도로(북쪽지역)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필요	○ 개발지역 인근 지역 특히 직선상 맞은 도로(북쪽지역)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실시하겠음	반영
	2. 환경보전의 대안		
	1.(대기환경) 사업지구 내 화학업종 유치계획으로 시설 운영 시 대기오염이 우려되니 대기오염 측정 및 오염 처리방안의 강화가 필요하며 향후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유발 업종 등에 대하여 최적의 가용 방지기술(BAT)을 적용하여 입주토록 유도하여야 함	○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유발 업종 등에 대하여 최적의 가용 방지기술을 적용하여 입주토록 유도하겠음(입주업체 중 화학업종은 제외하였음)	반영
	2.(수환경) 홍수 시 대책과 지하수 관리 대책 마련	○ 재해영향 검토 실시하여 홍수 시 대책과 지하수 관리 대책 마련하겠음	반영
	3.(토지환경) 가. 사업지구 북측, 서측 경계로 마을이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바, 산림 및 지형훼손 등을 최소화하고 경관영향을 고려해야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의 경계조정,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 능선부로 자연적으로 차폐된 지형 보전, 완충녹지 조성, 입주업종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 대안 제시	○ 산림 및 지형훼손 등을 최소화하고 경관영향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반영
	나. 산업단지 경계부와 주변지역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녹지폭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생태 산업단지화 필요함	○ 산업단지 경계부의 충분한 녹지폭을 확보하여 주변지역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였음	반영
	4.(생활환경) 친환경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연료 사용을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LED 등)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LED 등) 방안에 대해 검토·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심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Ⅱ. 심의 의견	**3. 평가항목 및 범위 등**		
	1. (총괄) 가. 평가방법 및 평가범위 등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22호, 2016.1.21.)을 활용하여 평가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22호, 2016.1.21.)을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겠음	반영
	나. 환경현황조사는 계절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한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계절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한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실시하겠음	반영
	다. 입주업종을 고려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선정하여야 하며, 대기환경, 수환경, 생활환경 항목을 중점 항목으로 설정하여 항목별 구체적인 영향예측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입주업종에 따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선정하고, 대기환경, 수환경, 생활환경 항목을 중점 항목으로 설정하여 항목별 구체적인 영향예측 및 대책을 마련하겠음	반영
	라. 입주 예상 산업에서 사용하는 원료와 배출물질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예측하여 영향평가하기 바라며 배출 가능한 물질들에 대한 개발 단계별 뿐만아니라 운영 중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사 필요	○ 산업단지 운영 시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실시하겠음	반영
	마. 녹지(장군산) 내 유치하고 있으며 표고 높이가 높은 관계로 이에 대한 대기, 수질영향평가 필요 → 장군산 일대엔 공단이 없음. 상대적으로 공단이 들어설 경우 인근 주민들의 우려, 불안감 해소 방안 강구 필요	○ 산업단지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기환경 및 수환경에 대한 영향예측 및 평가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우려 및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겠음	반영
	2. (동·식물상) 가. 동·식물상의 조사는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생물출현이 가장 많은 시기에 분류군 별로 실시하여야 함	○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생물 출현이 가장 많은 시기에 분류군 별로 조사를 실시하겠음	반영
	나. 사업지구 중심으로 보전산지와 식생군락, 노거수 등 보전가치가 있는 서식지나 수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보전산지와 식생군락, 노거수 등 보전가치가 있는 서식지나 수목조사 실시하겠음	반영
	다. 동·식물상 조사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서식지 및 서식 환경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야생동물의 이동경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동·식물상 조사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서식지 및 서식 환경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야생동물의 이동경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음	반영

심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Ⅱ. 심의 의견	3.(대기질) 가.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대기질 조사항목(대기질 현황, 대기오염원 현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현황)과 조사범위(현장조사, 자동측정망 등), 조사방법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이 요구됨	○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대기질 조사항목과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겠음	반영
	나. 대기 모델링 자료 입력시에는 동 사업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등에 대하여 계절별 현황 조사와 기상측정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하고, 사업지구 인근 대기질 및 악취지점을 풍향을 고려한 조사지점 및 횟수 등 선정하여야 함(최소 6개 지점 & 계절별 측정 (4회))	○ 공사 시 및 운영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등에 대하여 계절별 현황 조사(6개 지점, 4회)와 기상 측정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대기질 모델링 자료 입력 시 활용하겠음	반영
	다. 입주업종별 공정상 발생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가능성 검토 및 인근 주거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기유해물질별 방지시설 설치계획 수립이 요구됨	○ 입주업종별 공정상 발생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가능성 검토 및 인근 주거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기유해물질별 방지시설 설치계획 수립하겠음	반영
	4.(온실가스)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지침(환경부, '15.12.9 개정)에 따라 공사 시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저감목표에 따른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공사 시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저감목표에 따른 저감대책을 강구하겠음	반영
	5.(수질) 가. 지표수질에 대한 현장조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환경기준)」 상의 사람의 건강보조 기준과 생활환경기준 항목을 참조하고 지하수질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먹는 물의 수질기준)」 상의 수질기준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기술해야함.	○ 지표수질에 대한 현장조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환경기준)」 상의 사람의 건강보조 기준과 생활환경기준 항목을 참조하고 지하수질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먹는 물의 수질기준)」 상의 수질기준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겠음	반영
	나. 월송천과 합류되기 이전 금강 상류 지점에 대한 수질조사지점 추가 (측정망이 있을 경우 활용 가능) - (측정항목) 운영 시 폐수발생으로 인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산업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측정항목에 추가	○ 월송천과 합류되기 이전의 금강 상류와 합류된 이후의 금강의 수질조사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음	반영

심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Ⅱ. 심의 의견	다. 토사유출과 부유토사 유출 저감을 위한 임시 침사지와 영구저류지 규모 및 위치, 제원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함.	○ 우수유출량과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여 임시침사지 및 영구저류지 설계에 반영하겠음	반영
	6. (수리·수문)동 사업부지에서 공사 시 및 운영 시 하류 수계 등 주변지역에 강우 유출수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적정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공사 시 및 운영 시 하류 수계 등 주변지역에 강우 유출수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 마련하겠음	반영
	7. (토지이용) 사업 시행시 산림 및 지형훼손 등을 최소화하고 경관영향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지구 내 경사도, 임상, 표고, 건축물 입지의 용이성, 경관 양호성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현황분석도를 작성하고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중첩하여 작성해야함	○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현황분석도를 작성하고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중첩하여 작성하겠음	반영
	8. (지형지질) 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도를 작성하고 지질도 상의 모든 지층에 대하여 지질기호를 표시하고 범례를 작성, 범례에 표시된 지층 및 암석에 대하여 분포 특징, 지질구조, 암상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해야 함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도를 작성하고 지질도 상의 모든 지층에 대하여 지질기호를 표시하고 범례를 작성, 범례에 표시된 지층 및 암석에 대하여 분포 특징, 지질구조, 암상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하겠음	반영
	나. 사업지구 개발로 인한 지형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절ㆍ성토사면이 발생하는 지역을 예측하고 단면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지구 개발로 인한 지형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절ㆍ성토사면이 발생하는 지역을 예측하고 단면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겠음	반영
	9.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처리방안이 요구됨.	○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겠음	반영
	10. (소음·진동) 가. 주변의 도로와 산업단지 등 소음ㆍ진동원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정온시설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주요 정온시설에 대하여 지형적 차폐나 이격거리 등을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소음ㆍ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정온시설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주요 정온시설에 대하여 지형적 차폐나 이격거리 등을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겠음	반영

심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Ⅱ. 심의 의견	다. 주변 정온시설의 시설별 한계소음·진동도를 고려하여 발파공법을 결정하고 발파 예상지역과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 및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의 영향지역을 조사하여야 함	○ 주변 정온시설의 시설별 한계소음·진동도를 고려하여 발파공법을 결정하고 발파 예상지역과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 및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의 영향지역을 조사하고 제시하겠음	반영
	11. (경관) 경관 영향권 내에 마을 및 취락지, 관광지, 도로 등에서 예비 조망점을 선정하고 가시권 분석을 통해 현저한 경관변화 예상 지역, 사업지구의 조망이 용이한 지역, 인구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최종 조망점을 선정해야 함	○ 경관 영향권 내에 마을 및 취락지, 관광지, 도로 등에서 예비 조망점을 선정하고 가시권 분석을 통해 현저한 경관변화 예상 지역, 사업지구의 조망이 용이한 지역, 인구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최종 조망점을 선정하겠음	반영
	12. (전파장해) 사업지구 내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어 이설이 필요한 바, 전파장해 항목을 중점항목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설계획을 제시	○ 전파장해 항목을 중점검토항목에 포함하고, 이설계획을 제시하겠음	반영
	13. (건강영향) 개발지역의 고지대 해당에 대한 주변 대기, 수질영향 평가 재선정 필요 → 특히 지하수, 대기 측정 평가 지역의 추가 조사가 필요, 인근거주 주민 마을들에 대한 조사가 요구됨	○ 본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현황조사 지점 및 평가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음	반영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1. 현 인근 주민(어덕이 마을 등)의 주거환경 조건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우려, 불안증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가 필요함	○ 본 사업내용 및 환경영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우려 및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음	반영
	2.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 외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과 저감방안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가요약서를 작성·제공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 외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과 저감방안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겠음	반영
	3. 관련법에 의거 주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해진 법령 규정에 국한되지 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되는 지역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려 사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관련법령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4. 입주업체에 대한 생산 품목이나 재무 정보 등을 주민에게 공개 바람	○ 입주업체에 대한 관련 정보 주민에게 공개하겠음	반영

심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Ⅱ. 심의 의견	5. 기 타		
	1. 공주시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과잉공급 여부, 상위 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지역개황에 산업(농공)단지 조성·운영 현황 제시	○ 공주시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과잉공급 여부, 상위 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제시하겠음	반영
	2.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개발에 따른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데, 계획단계에서부터 발생될 영향에 대해 미리 저감대책을 잘 수립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추진하여 모범적인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할 것임.	○ 계획단계에서부터 발생될 영향에 대해 미리 저감대책을 잘 수립하여, 모범적인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음	반영
	3.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추가로 강구하여야 함	○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추가로 강구하겠음	반영
	4. 산지 부분의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계획고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차조성, 절 · 성토계획 조정, 부지 내 도로계획 수정 등 지형에 순응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지구 조정이 필요	○ 산지 부분의 대규모 절·성토사면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발생되는 사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저감방안을 시행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반영
	5. 누출사고 등 재난 대비 저장시설 등의 위치선정 등이 검토되어야 함	○ 재난 대비 저장시설 등의 위치를 검토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겠음	반영
	6.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혐오업종의 입주제한 방안(화학물질 취급업체, 유해 물질 취급 업종 등) 적극 검토 요망	○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혐오업종의 입주제한 방안(화학물질 취급업체, 유해 물질 취급 업종 등) 적극 검토하겠음	반영

제3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1 평가대상지역의 검토

○ 본 동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음

3.1.1 사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동현동 산51-1번지 일원

– 면적 : 351,833㎡

○ 시간적 범위

–공사 시 및 운영 시

3.1.2 항목별 평가대상범위

<표 3.1.2-1> 항목별 평가대상범위

구 분		현황조사 범위	예측범위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자연생태 환경	동 · 식 물 상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 영향예상지역	공사 시, 운영 시	사업지구 및 주변 영향지역
	자연환경자산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 시, 운영 시	사업지구 및 주변 영향지역
대기 환경	기 상	•사업지구 인근관측소 10년간 자료	–	사업지구, 공주시
	대 기 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 시, 운영 시	사업지구 및 주변 영향지역
	악 취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 시	사업지구 및 주변 영향지역
	온 실 가 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 시, 운영 시	사업지구
수 환경	수 질	•사업지구 주변 인근 수계	공사 시, 운영 시	사업지구 주변수계
	수 리 · 수 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 시, 운영 시	사업지구 주변수계

<표 3.1.2-1> 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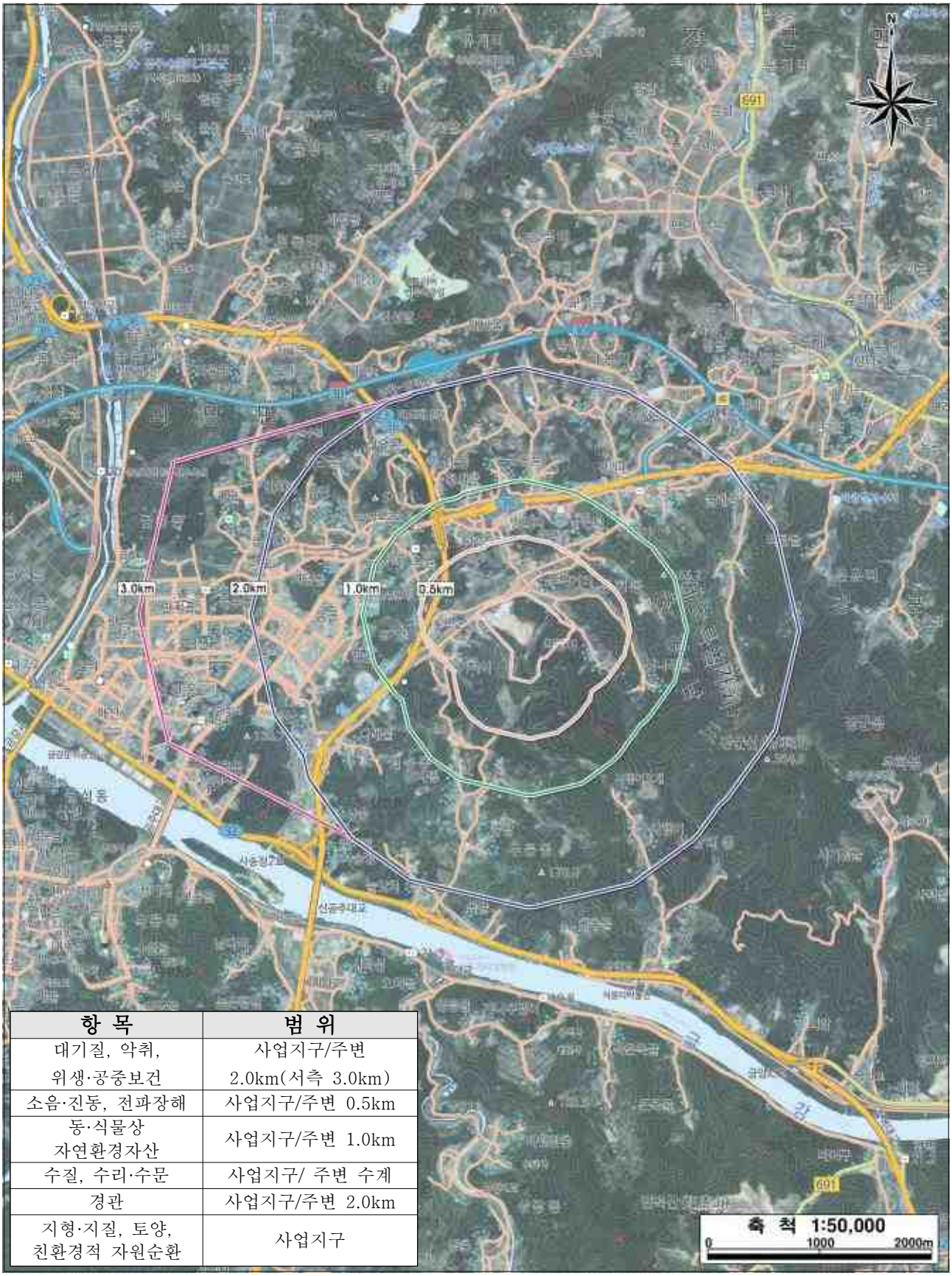
구 분		현황조사 범위	예측범위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토지 환경	토 지 이 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 시, 운영 시	사업지구
	토 양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 시, 운영 시	사업지구
	지 형 · 지 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 시	사업지구
생활 환경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사업지구를 포함한 공주시 일원	공사 시, 운영 시	사업지구
	소 음 · 진 동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 시, 운영 시	사업지구 및 주변 영향지역
	경 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 시	사업지구 및 주변 영향지역
	전 파 장 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 시 운영 시	사업지구 및 주변 영향지역
	위생·공중보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 시	사업지구 및 주변 영향지역
사회경제 환경	인구 및 주거	•사업지구를 포함한 공주시 일원	공사 시, 운영 시	사업지구, 공주시
	산 업	•사업지구를 포함한 공주시 일원	운영 시	사업지구, 공주시

3.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인자는 공사 시 지형·지질의 변화와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서식환경 변화로 인한 동·식물상의 영향,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 및 분뇨의 발생, 토지이용 변화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지역의 설정은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인자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표 3.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설 정 기 준	대 상 지 역 범 위
동·식물상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접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의 영향예상지역 -1.0km 이내지역
자연환경자산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 영향예상지역 - 5.0km 이내지역
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미세먼지, 가스상 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인접지역 •산업시설 운영으로 인한 악취 영향이 예상되는 인접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 주거지역 - 2.0km 이내지역 - 사업지구 서측은 공주시가지를 포함하는 3.0km이내지역
수질 (수리·수문)		•오·폐수 발생 •토사유출 및 우수발생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소음·진동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인접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 주거지역 -0.5km 이내지역
지형·지질, 토양,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접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 영향예상 지역
경 관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접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의 영향예상지역 -2.0km 이내지역
전파장해		•사업지구 내 송전철탑의 전자파 영향이 예상되는 인접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 주거지역 -0.5km 이내지역
기 타	직 접 영향권	•부지정지공사,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식생변화, 가옥 등 지장물 철거 등	•사업지구 및 주변 영향예상 지역
	간 접 영향권	•인구 및 주거실태 변화,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및 계획, 오염부하량(대기, 수질, 폐기물), 장래 교통량	•공주시 일원



항 목	범 위
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사업지구/주변 2.0km(서측 3.0km)
소음·진동, 전파장해	사업지구/주변 0.5km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사업지구/주변 1.0km
수질, 수리·수문	사업지구/ 주변 수계
경관	사업지구/주변 2.0km
지형·지질, 토양,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지구

(그림 3.2-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제4장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4.1 환경영향평가 항목선정

4.1.1 항목별 평가 항목의 선정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4개 항목을 중점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4개 항목을 일반항목으로 나머지 3개 항목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미미하여 미포함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외하였음

<표 4.1.1-1> 항목별 평가 항목의 선정(제외) 사유

구분	평가항목	선 정 사 유
공통사항		•평가항목 설정시 산업단지 개발사업 사례 등을 참고로 하여, 사업특성 및 사업지구 입지특성을 고려함
중점 항목 (14개)	동 · 식 물 상	•공사 시 야생 동·식물 영향검토 및 지구내 임상지역 녹지자연도등급 변화 검토 •운영 시 공원·녹지 조성에 따른 야생동식물 재서식 현황 검토
	대 기 질	•공사 시 투입장비 및 토사이용에 따른 대기질 영향검토 •운영 시 사업지구 내 연료사용계획 검토 •입지특성 및 생산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범위 내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한 영향예측
	악 취	•운영 시 공장가동에 의한 악취 영향 예측
	온 실 가 스	•사업지구 내 연료사용 및 에너지 이용시설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영향검토
	수 질	•공사 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비점오염으로 인한 주변수계 영향 검토 •운영 시 용수 공급 및 오·폐수처리계획 검토
	수 리 · 수 문	•공사 시 및 운영 시 재해(홍수 등) 영향 검토
	토 지 이 용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및 자연친화적인 토지이용 변화 유도
	토 양	•사업지구 내 지장물 등의 분포에 따른 토양오염개연성 여부 검토 •운영 시 토양오염방지계획 수립
	지 형 · 지 질	•보전가치 있는 지형·지질 훼손 여부 검토 •부지정지 시 절·성토에 따른 사면 및 토공발생 영향 검토

구분	평가항목	선 정 사 유
중점 항목 (14개)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 시 생활폐기물, 분뇨 및 폐유 발생량 산정하여 검토 •공사 시 지장물 및 훼손수목에 의한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발생량 산정하여 검토 •운영 시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산정하여 검토
	소음·진동	•공사 시 공사장비에 의한 주변 정온시설의 소음·진동영향 검토 •운영 시 도로교통 및 공장소음에 의한 주변지역 소음영향 검토
	경관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의 훼손 및 기존 시설과 자연지형에 어울리는 경관 계획 수립 유도
	전파장해	•사업지구 내 송전철탑으로 인한 전파장해 영향 검토
	위생·공중보건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검토
일반 항목 (4개)	기상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평가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자연환경자산	•기존문헌 및 현지조사를 시행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검토
	인구·주거	•인구, 주거 현황조사
	산업	•사업시행에 따른 산업영향 검토
미포함 항목 (3개)	위락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위락시설 영향은 미미함
	일조장해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일조장해 영향 없음
	해양환경	•사업지역 입지특성 및 지역특성상 해당사항 없음

4.2 항목별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 등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 등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범위 및 방법을 선정하고 선정사유를 제시하였음

<표 4.2-1> 항목별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 등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선정사유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1.0km 이내지역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육상 동·식물상, 육수 동·식물상, 주요종 분포 현황 파악 후 사업으로 인한 영향 예측	•사업시행후 녹지자연도 변화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종에 미치는 영향검토
	자연환경자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5.0km 이내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에 분포하는 자연환경자산 현황 및 경관적·학술적가치가 큰 지역 분포 현황 파악 후 사업으로 인한 영향 예측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영향검토
대기환경	기 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최인근 기상관측망(대전기상청)의 최근10년 관측자료 분석 정리	•최인근 기상청 자료 분석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2.0km이내지역 -서측 3.0km이내지역	•사업지구 기상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확산모델링 수행(AERMOD)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주변 대기오염(PM-10, PM-2.5, NO_2 등) 가중도 영향검토
	악 취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2.0km이내지역 -서측 3.0km이내지역	•사업지구내 유치업종에 따른 악취 영향 예측(기존자료 활용)	•입주업종의 악취발생량에 따른 영향검토
	온실가스	사업지구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영향검토
수환경	수 질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공사시 토사유출량, 문헌자료를 이용한 운영시 생활계오염원, 토지계오염원, 오·폐수배출량 산정	•주변 수계 영향 및 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발생에 따른 영향검토 •비점오염물질 및 배출부하량 예측과 생활오수 및 공장가동에 따른 폐수 발생에 따른 영향검토
	수리·수문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사업지구 사전재해영향검토 보고서 참조	•공사로 인한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에 미치는 영향검토

<표 4.2-1> 표 계속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선정사유
토지환경	토지이용	사업지구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하여 영향예측	•사업시행 전, 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에 따른 영향검토
	토 양	사업지구	•토양오염도 현황 파악 및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공사 시 및 운영 시 토양오염 예측	•사업지구의 토양오염 현황 및 공사 시 및 운영 시 토양오염 유발에 따른 영향검토
	지형·지질	사업지구	•사업지구 내 지형, 지질 개황, 토질 등에 대한 문헌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하여 예측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및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사면안정성에 따른 영향검토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지구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예측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에 따른 영향검토
	소음·진동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0.5km 이내	•합성소음식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 등을 적용하여 공사장비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을 예측	•공사 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및 운영 시 통행차량, 공장소음에 따른 소음 영향검토
	경 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2.0km 이내지역	•수치지도, ArcView를 이용한 경관현황 분석 및 경관변화 예측	•운영 시 경관 변화에 따른 주변 경관과의 이질성 및 영향검토
	전파장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0.5km 이내	•사업지구 내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 전자파 발생 예측	•사업지구 내 송전철탑에 따른 전자파 영향 검토
	위생·공중보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2.0km이내지역 −서측 3.0km이내지역	•AERMOD 확산모델 이용한 발암 및 비발암성물질 건강영향 예측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발암 및 비발암성 물질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건강에 대한 영향검토
사회·경제환경	인구·주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관련 계획에 따른 유입 인구 변화 예측	•공사 시 및 운영 시 유입인구 변화에 따른 영향검토
	산 업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관련 계획에 따른 산업 환경 변화 예측	•운영 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검토

4.3 항목별 현황조사 내용 및 조사지점 선정

4.3.1 현황조사 내용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및 조사지점 등은 다음과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필요 시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임

<표 4.3.1-1> 현황조사 내용

평가항목		현 황 조 사 내 용	비 고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	① 조사내용 : 자연현황(식생현황, 수변, 습지 등 분포,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km 이내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탐문조사, 현지조사	
	자연환경자산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자산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반경 5.0km 범위)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	
대기환경분야	기 상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기상현황 ② 조사방법 : 대전기상청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활용	
	대기질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6지점×4회(3일 연속)	
	악 취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악취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6지점×4회	
	온실가스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조사	
수환경분야	수 질	① 조사내용 : 하천, 지하수의 현황농도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수계 ③ 조사방법 : 하천유황상태를 고려하여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지표수질(5지점×3회), 지하수질(2지점×3회)	
	수리·수문	① 조사내용 : 하천현황 및 홍수유출량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수계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표 4.3.1-1> 표 계속

평가항목		현 황 조 사 내 용	비 고
토지 환경 분야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토 양	① 조사내용 : 토양오염원 및 토양오염 현황 조사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3지점×3회	
	지형·지질	① 조사내용 : 지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 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	
	소음·진동	① 조사내용 : 소음현황(생활소음, 도로소음) 및 주요 발생원 조사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5지점×3회	
	경 관	① 조사내용 :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현지조사실시	
	위생·공중보건	① 조사내용 : 위생공중보건 영향원 조사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사회 경제 환경 분야	인구·주거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인구·주거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	
	산 업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산업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	

4.3.2 환경질 조사항목 및 지점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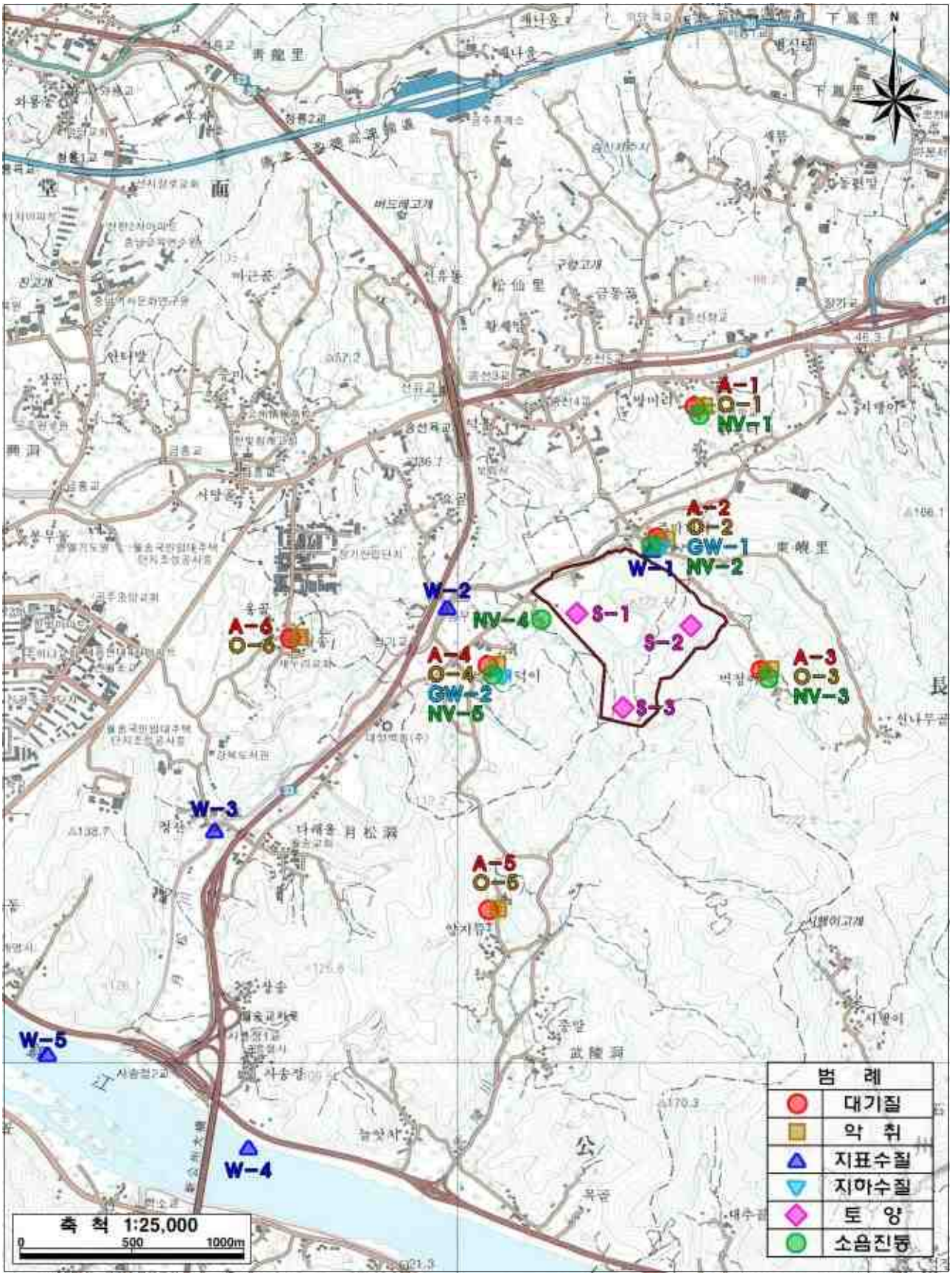
가. 조사항목

○ 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기질, 지표수질, 소음·진동, 지하수질, 토양, 악취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하였음

- 대기질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조 관련 대기질 환경기준 항목
- 지표수질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조 관련 하천수 환경기준 항목
- 소음·진동 : 주·야간 도로변, 일반지역 생활소음·진동
- 지하수질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먹는물 수질기준
- 토양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및 3의 토양오염우려 및 대책기준 항목
- 악취 : 악취방지법에 의한 복합악취 항목

<표 4.3.2-1> 조사항목 및 조사회수 선정

구 분	측 정 항 목	측정지점수	조사회수	비고
대기질	• PM-2.5, PM-10, SO_2, CO, NO_2, Pb, 벤젠, O_3	6지점	4회/3일연속	
	•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Hg, 스틸렌, 염화비닐, Ni, Cr^{6+}, Cd, As, 포름알데히드	6지점	4회 (건강영향평가)	
악취	•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톨루엔, 자일렌	6지점	4회	
지표수질	• pH, BOD, COD, SS, DO, TOC, T-N, T-P, 총대장균군수, 분원성대장균군, CN, Hg, 유기인, PCB, Cr^{+6}, Pb, Cd, As, ABS, 유량	5지점	3회	
지하수질	• pH, $KMnO_4$소비량, NO_3-N, Cl^-, SO_4^{2-}, Fe, Mn, 색도, 경도, 탁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CN, Hg, Cd, Zn, Pb, NH_3-N, As, Cr^{+6},Cu	2지점	3회	
토양	• Cd, Cu, As, Pb, Hg, Cr^{6+}, Zn, Ni, CN, 페놀, TPH, BTEX, F	3지점	3회	
소음·진동	• 소음(주간4회, 야간2회), 진동(주간2회, 야간1회)	5지점	3회	



(그림 4.3-1) 평가시 환경질 조사지점도(계획)

<표 4.3.2-2> 조사지점 위치도

구 분	조사지점	주 소	비고
대기질 악취	A - 1, O - 1	충남 공주시 장척로 116-14 (공주정명학교)	
	A - 2, O - 2	충남 공주시 동현길 73 (동현동 267-2)	
	A - 3, O - 3	충남 공주시 먹정길 64 (동현동 405-1)	
	A - 4, O - 4	충남 공주시 월송동현로 240-24 (동현동 460)	
	A - 5, O - 5	충남 공주시 무릉동길 152-1 (무릉동 219)	
	A - 6, O - 6	충남 공주시 옹골길 56-19 (월송동 8)	
지표수질	W - 1	충남 공주시 동현동 258-1 인근	월송천
	W - 2	충남 공주시 동현동 714-1 서측 15m 동무교	월송천
	W - 3	충남 공주시 월송동현로 94 (월송동 427) 북서측 25m	월송천
	W - 4	충남 공주시 월송동 564-7 신공주대교 상류 100m	금 강
	W - 5	충남 공주시 월송동 564-7 인근 월송천, 금강 합류점 하류 200m	금 강
지하수질	GW - 1	충남 공주시 동현길 73 (동현동 267-2)	
	GW - 2	충남 공주시 월송동현로 240-24 (동현동 460)	
토 양	S - 1	충남 공주시 동현동 497-2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
	S - 2	충남 공주시 동현동 산51-1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
	S - 3	충남 공주시 동현동 산51-1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
소음·진동	NV - 1	충남 공주시 장척로 116-14 (공주정명학교)	
	NV - 2	충남 공주시 동현길 73 (동현동 267-2)	
	NV - 3	충남 공주시 먹정길 64 (동현동 405-1)	
	NV - 4	충남 공주시 월송동현로 280-9 (동현동 487)	
	NV - 5	충남 공주시 월송동현로 240-24 (동현동 460)	

제5장 주민 등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5.1 주민 등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 평가서(초안) 공고

– 본 사업은 일간신문(중앙, 지방), 충청남도 홈페이지, 공주시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

○ 평가서(초안) 공람

–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충청남도 홈페이지, 공주시 홈페이지에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10쪽 내외)를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충청남도 및 공주시 읍·면사무소 등에 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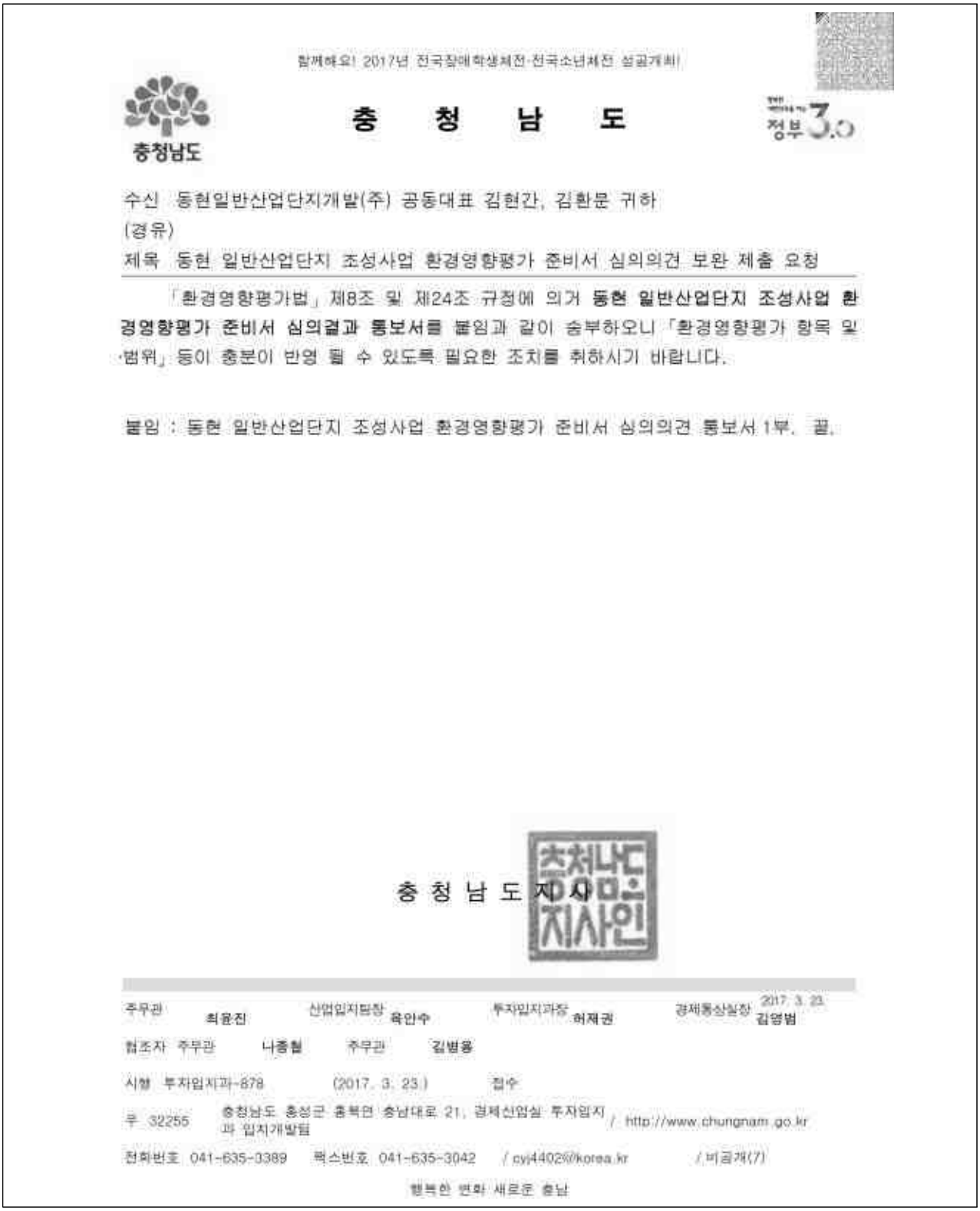
– 평가서(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초안) 공람 기간 중 1회 실시

– 설명회 장소는 충청남도 공주시과 협의하여 결정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 개최 요구시 관련법에 의거 개최 할 계획임

제6장 부 록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함께해요! 2017년 전국장애학생체전·전국소년체전 성공개최!

충청남도

충 청 남 도

정부3.0

수신 동현일반산업단지개발(주) 공동대표 김현간, 김환문 귀하

(경유)

제목 동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의견 보완 제출 요청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거 **동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결과 통보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이 충분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동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의견 통보서 1부. 끝.

충 청 남 도 지 사 (충청남도지사인)

주무관 최윤진 산업입지팀장 육안수 투자입지과장 허재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2017. 3. 23.

협조자 주무관 나종철 주무관 김병용

시행 투자입지과-878 (2017. 3. 23.) 접수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경제산업실 투자입지과 입지개발팀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3389 팩스번호 041-635-3042 / cyj4402@korea.kr / 비공개(7)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결과 통보서

[동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Ⅰ 총괄 의견

1.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조사지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사업지구를 1, 2공구로 구분 제시한 바, 단계별 공사계획 여부 등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지형변화 등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3.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밀하게 예측, 조사, 평가하여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4. 개발 예정지역이 고지대, 생태자연도 1급지 인근에 해당되므로 개발단계 및 운영 중을 포함하여 오염물질의 평가, 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5. 사업지구 주변에 위치한 산업단지 등 운영(계획)된 사업 추진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누적 평가하여야 함.
6.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환경적 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내용, 환경저감방안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평가 위원들이 개진한 내용을 참고하여 항목과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Ⅱ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총괄)

가. 대상지역 범위는 사업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

나. 평가대상지역은 사업지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현지여건에 맞게 설정하여야 하며, 토지적성평가 및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자연환경 등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대상범위를 설정하되 사업지구 주변의 주거지역 및 정온시설(주변 취락지, 학교등을 포함), 동·식물 서식환경, 농경지 등을 고려하여

- 1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시켜 설정함으로써,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영향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예측하여야 할 것임

2. (자연환경자산) 특정야생 동·식물(법정보호종)에 대한 조사항목과 조사시기, 조사경로를 작성(반경5km 범위)하고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결과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3. (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사업지구 서측 2km밖으로 공주 도심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악취가 다량 배출되는 산업시설이 입지하는 사업으로 해당지역을 포함하여 영향예측
4. (건강영향) 개발지역 인근 지역 특히 직선상 맞은 도로(북쪽지역)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필요

2 환경보전의 대안

1. (대기환경) 사업지구 내 화학업종 유치계획으로 시설 운영 시 대기오염이 우려되니 대기오염 측정 및 오염 처리방안의 강화가 필요하며 향후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유발 업종 등에 대하여 최적의 가용 방지기술(BAT)을 적용하여 입주토록 유도하여야 함
2. (수환경) 홍수 시 대책과 지하수 관리 대책 마련
3. (토지환경)

가. 사업지구 북측, 서측 경계로 마을이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바, 산림 및 지형훼손 등을 최소화하고 경관영향을 고려해야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의 경계조정,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 능선부로 자연적으로 차폐된 지형 보전, 완충녹지 조성, 입주업종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 대안 제시

나. 산업단지 경계부와 주변지역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녹지폭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생태 산업단지화 필요함

4. (생활환경) 친환경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연료 사용을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LED 등)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평가항목 및 범위 등

1. (총괄)

가. 평가방법 및 평가범위 등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22호, 2016.1.21.)을 활용하여 평가되어야 함

나. 환경현황조사는 계절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한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 입주업종을 고려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선정하여야 하며, 대기환경, 수환경, 생활환경 항목을 중점 항목으로 설정하여 항목별 구체적인 영향예측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라. 입주 예상 산업에서 사용하는 원료와 배출 물질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예측하여 영향평가하기 바라며 배출 가능한 물질들에 대한 개발 단계별 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사 필요

마. 녹지(장군산) 내 유치하고 있으며 표고 높이가 높은 관계로 이에 대한 대기, 수질영향평가 필요 → 장군산 일대엔 공단이 없음. 상대적으로 공단이 들어설 경우 인근 주민들의 우려, 불안감 해소 방안 강구 필요

2. (동·식물상)

가. 동·식물상의 조사는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생물출현이 가장 많은 시기에 분류군 별로 실시하여야 함

나. 사업지구 중심으로 보전산지와 식생군락, 노거수 등 보전가치가 있는 서식지나 수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다. 동·식물상 조사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서식지 및 서식 환경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야생동물의 이동경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3. (대기질)

가.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대기질 조사항목(대기질 현황, 대기오염원 현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현황)과 조사범위(현장조사, 자동측정망 등), 조사방법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이 요구됨

나. 대기 모델링 자료 입력시에는 동 사업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 및 악취 등에 대하여 계절별 현황 조사와 기상 측정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하고, 사업지구 인근 대기질 및 악취지점을 풍향을 고려한 조사지점 및 횟수 등 선정하여야 함(최소 6개 지점 & 계절별 측정 (4회))

다. 입주업종별 공정상 발생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가능성 검토 및 인근 주거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기유해물질별 방지시설 설치계획 수립이 요구됨

4. (온실가스)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지침(환경부, '15.12.9 개정)에 따라 공사 시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저감목표에 따른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5. (수질)

가. 지표수질에 대한 현장조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환경기준)」상의 사람의 건강보조 기준과 생활환경기준 항목을 참조하고 지하수질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먹는 물의 수질기준)」상의 수질기준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기술해야함.

나. 월송천과 합류되기 이전 금강 상류 지점에 대한 수질조사지점 추가 (측정망이 있을 경우 활용 가능)

- (측정항목) 운영 시 폐수발생으로 인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산업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측정항목에 추가

다. 토사유출과 부유토사 유출 저감을 위한 임시 침사지와 영구저류지 규모 및 위치, 제원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함.

6. (수리·수문)동 사업부지에서 공사 시 및 운영 시 하류 수계 등 주변지역에 강우 유출수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적정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7. (토지이용) 사업 시행시 산림 및 지형훼손 등을 최소화하고 경관영향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지구 내 경사도, 임상, 표고, 건축물 입지의 용이성, 경관 양호성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현황분석도를 작성하고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중첩하여 작성해야함

8. (지형지질)

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도를 작성하고 지질도 상의 모든 지층에 대하여 지질기호를 표시하고 범례를 작성, 범례에 표시된 지층 및 암석에

대하여 분포 특징, 지질구조, 암상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해야 함

나. 사업지구 개발로 인한 지형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절·성토사면이 발생하는 지역을 예측하고 단면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9.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처리방안이 요구됨.

10. (소음·진동)

가. 주변의 도로와 산업단지 등 소음·진동원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정온시설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주요 정온시설에 대하여 지형적 차폐나 이격거리 등을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나. 주변 정온시설의 시설별 한계소음·진동도를 고려하여 발파공법을 결정하고 발파 예상지역과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 및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의 영향지역을 조사하여야 함

11. (경관) 경관 영향권 내에 마을 및 취락지, 관광지, 도로 등에서 예비 조망점을 선정하고 가시권 분석을 통해 현저한 경관변화 예상 지역, 사업지구의 조망이 용이한 지역, 인구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최종 조망점을 선정해야 함

12. (천파장해) 사업지구 내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어 이설이 필요한 바, 천파장해 항목을 중점항목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설계획을 제시

13. (건강영향) 개발지역의 고지대 해당에 대한 주변 대기, 수질영향 평가 재선정 필요 → 특히 지하수, 대기 측정 평가 지역의 추가 조사가 필요, 인근 거주 주민 마을들에 대한 조사가 요구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1. 현 인근 주민(어덕이 마을 등)의 주거환경 조건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우려, 불안증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가 필요함

2.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 외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과 저감방안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5 -

※ 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가 요약서를 작성·제공

3. 관련법에 의거 주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해진 법령 규정에 국한되지 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되는 지역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려 사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입주업체에 대한 생산 품목이나 재무 정보 등을 주민에게 공개 바람

5 기 타

1. 공주시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과잉공급 여부, 상위 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지역개황에 산업(농공)단지 조성·운영 현황 제시
2.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개발에 따른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데, 계획단계에서부터 발생될 영향에 대해 미리 저감대책을 잘 수립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추진하여 모범적인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할 것임.
3.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추가로 강구하여야 함
4. 산지 부분의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계획고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차조성, 절·성토계획 조정, 부지 내 도로계획 수정 등 지형에 순응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지구 조정이 필요
5. 누출사고 등 재난 대비 저장시설 등의 위치 선정 등이 검토되어야 함
6.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혐오업종의 입주제한 방안(화학물질 취급업체, 유해 물질 취급 업종 등) 적극 검토 요망

- 6 -